

# 부모역할 지원정책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 A Pilot Study for Developing Parenting-Aid Policies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교수 송혜림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부교수 박정윤  
인하대학교 소비자아동학과  
교수 이완정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조교수 성미애  
부교수 서지원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진미정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Welfare, University of Ulsan  
*Professor : Hye-Rim Song*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Jeong-Yun Park*

Department of Consumer and Child Studies, Inha University  
*Professor : Wanjeong Lee*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 Miai Sung*  
*Assistant Professor : Jiwon Seo*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Associate Professor : Meejung Chin*

---

**Corresponding Author :** Jeong-Yun Park, Department of Family Welfare, Chung-Ang University, Nae-Ri 72-1, Daeduck-Myun, Anseong-Si, Gyunggi-Do, 456-756, Korea Tel: +82-31-670-4838 Fax: +82-31-675-4746 E-mail: pjy4838@cau. ac. kr

\* 본 연구는 2008년도 대한가정학회 가정학실천위원회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위탁연구를 재구성한 것임.

##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국내의 부모역할지원 정책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설정 |
| II. 연구방법           | V. 논의 및 제언                        |
| III. 외국의 부모역할지원 정책 | 참고문헌                              |

## &lt;Abstract&g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ist the development of parenting-aid policies by analyzing information from life perspectives, family system theory, and integrated family policy perspectives.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literature using a variety of sources including internet sites, laws, published material related to current parenting-aid policies. Based on analyses we formulated four agendas: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supporting diverse family parenting, guaranteeing parent's rights, and supporting parenting of dual-income families parenting. The results were as follow: Firstly, for empowering parent competency, we proposed the development of family relationship empowerment programs including family life cycle and children-raising support services. Secondly, for divers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access to integrated parenting-aid programs dependent on family types. Thirdly, for guaranteeing parent's rights, we proposed the supporting of child raising costs and tax returns to families with children, and provide child allowances. Finally, for dual-income family parenting, we proposed that schools and communities must recognize that dual-income families are a universal family type, establish family friendly business culture, and to develop a more democratic domestic family-relationship. This policy proposed a new paradigm where parents must be recognized as partners and stakeholder in development of family related policies. Ultimately, such policies will contribute to increased birth rate and development of a more respectful society.

**주제어(Key Words)** : 부모역할지원정책(parenting-aid policy), 부모역량(parent competency), 부모권(parent's right), 맞벌이 가정(dual-income families), 가족정책(family policies)

## I. 서론

세계적으로 아동 및 가족관련 정책은 그동안 정책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부모를 정책의 파트너로 여기면서 새로운 가족정책 및 육아정책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부모의 역량 강화, 가족의 양육환경 개선을 통해 아동의 전인적 발달과 복지는 물론 가족과 지역사회의 건강성을 지향하며 나아가 저출산 문제까지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관련 정책은 여전히 보육정책이나 요보호아동 혹은 시설아동을 지원하는 소극적 아동복지정책의 관점에 경도되어 왔다. 이로써 지극히 잔여주의적 관점을 보이고 있어, 저소득, 장애아동,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을 제외하고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직접적인 제도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부모역할은 가족의 전 생애주기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아동 및 부모역할 관련 지원은 생애 초기인 영유아기에만 집중되어 있는 한계점도 있다(송혜림, 2008). 하지만 자녀양육과 교육에 따른 비용은 학령기에 더

증가하며,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노부모-성인자녀 관계를 포함한 포괄적 부모역할 지원 정책이 요구된다. 아울러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부담은 각 가정이 공통적으로 체감하는 것이므로 모든 부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책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회 모든 아동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즉 부모역할지원 정책을 통해 부모의 권리와 책임을 새롭게 하고, 가족과 사회가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파트너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따라서 부모역할지원 정책을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은 저출산, 아동빈곤, 가족이기주의, 가족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부모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전 생애주기에 걸친 부모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역량 있는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자원을 공급하는 데 유용성을 갖는다. 특히 이러한 패러다임 변화는 자녀를 양육하는 데 따르는 경제적, 시간적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 개별 가정이 감당할 수 있는 자녀수가 감소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위기 요인이 되는 최근의 현상을 고려할 때, 자녀 출산과 양육의 의사결정 주체인 부모에게 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 손실을 보전하고 양질의 자녀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모역할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대응전략으로도 의의를 갖는다.

가족정책은 하나의 단위로서의 가족에 주목하면서 가족 구성원의 건강한 발달과 관계를 통해 가족의 안정성과 건강성을 도모하는 정책이다(송혜림, 2008; 김경신, 정민자, 라휘문, 진미정, 박정윤, 2008). 따라서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부모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개발은 정책의 대상을 아동에서 부모로 전환하면서 아동을 양육하는 돌봄 제공자로서의 부모역할 뿐 아니라 부모 개인의 발달적 상황과 욕구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또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부모가 공동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할 권리와 책임을 공유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양성평등한 부모역할 수행을 지원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족정책으로서의 부모역할 지원정책은 미래세대에 대한 불충분하거나 불공평한 인적 자본 투자, 가족의 해체로 인한 사회통합의 위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예방적 측면의 사회투자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생애발달론적 관점, 가족체계적 관점 및 통합적 가족정책 관점을 견지하면서 부모역할지원과 관련된 현행 법 및 문헌, 외국의 부모지원정책을 검토·분석하고,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부모역할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서 부모권 및 부모역할에 대한 성찰의 기회를 우리 사회에 제공할 것이며, 나아가 개별 가족 상황과 욕구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과제를 도출해냄으로써 부모의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과 서비스의 개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부모를 파트너로 하는 새로운 부모역할지원 정책 패러다임을 우리사회에 정착시키면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한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부모역할 지원과 관련된 기존의 정책들을 찾아 검토하고 새로운 정책 개발에 필요한 기초 지식을 얻기 위하여 문헌고찰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찰한 문헌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외국의 부모역할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찾아 내용을 분석하였고, 두 번째, 부모역할 지원과 관련된 국내의 법을 찾아 내용을 검토하였고, 마

지막으로 부모역할 지원과 관련된 정책보고서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정책 현황을 파악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의 정책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부모역할 지원 정책이 비교적 활발하게 개발 시행되고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사례를 찾아 검토하였다. 각 국의 자료는 관련부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파악하고 경향을 분석하였다.

둘째, 관련 법은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정책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부모역할 지원과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된 법, 즉 건강가정기본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안의 내용을 검토하여 관련 조항을 찾고 구체적인 정책과 연관시켜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정책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직접·간접적으로 추진하는 정부부처, 즉 여성부, 보건복지가족부, 노동부, 농림부를 중심으로 부모역할 지원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책 및 사업 내용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각 부처 홈페이지, 정부출연 정책연구소의 연구보고서, 보도자료 등을 찾아 관련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관련문헌을 분석하고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한 후, 연구진의 논의와 분석을 거쳐 우리나라 현재 상황에서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과제 내용을 개발하였다. 정책 과제 도출을 위해서 반복적인 브레인스토밍 과정을 거쳤으며, 도출된 과제의 수준과 현실 가능성 등에 대하여 자문을 거쳐 내용을 확정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부모역할 지원정책은 크게 네 가지 영역, 즉 부모의 역량강화, 부모권 보장 및 부모역할에 대한 보상, 다양한 가족을 위한 부모역할 지원,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 지원 등으로 구별되며, 각 정책영역은 정책의 필요성, 정책현황 분석 그리고 세부과제의 순으로 구성되었다.

## III. 외국의 부모역할지원 정책

### 1. 부모역할지원 정책 강화의 배경

서구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가족은 점차 '핵가족(nuclear family)'의 형태를 가진 사적 영역으로 강화되었다. 즉 노동이나 자원을 통한 소득이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과 휴식을 통한 재생산, 자녀의 양육, 긴밀한 부부관계를 중심으로

로 하는 사적 영역이 엄격히 분리되어 국가와 사회는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펼치고,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사적 영역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로 존중하게 되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가정폭력, 아동학대와 같은 제도적 복지의 대상이 되는 가족을 중심으로 하는 잔여주의적 복지정책이 이루어져 왔다.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정책 중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parenting)'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사적 영역에 속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국가나 사회가 긴밀히 관여할 주제라고 간주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의 자녀양육지원은 아동수당이나 부모수당, 산전후 휴가 등 구체적인 제도의 형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을 뿐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가치를 가르치고, 어떤 방식으로 상호작용을 할 것인지와 같은 과정적인 부분은 정책이 관여할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웠던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별거 및 이혼의 증가, 한부모의 증가, 결혼하지 않고 자녀를 낳아 키우는 부모의 증가 등으로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자녀를 가진 성인 남녀들이 그동안 강조되어 왔던 가족가치나 정체성을 지나치게 보수적인 것이라 평가절하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실생활에서 바람직한 부모역할 수행의 중요성까지 간과하게 되었다(Edwards & Gillies, 2004).

그런데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성인에 의해 방치된 빈곤층이나 한부모 가정 아동들이 청소년기 이후 학업포기, 실업, 범죄나 폭력 등 사회적 고비용을 초래하는 부적응자가 되는 경향이 높은 사회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Gillies, 2005). 이에 따라 근래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에 따르면 가족은 사적 제도로서 개인의 자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별거, 이혼, 비혼, 한부모 가정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모두 정책적 고려대상으로 삼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족은 안전하고 든든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 한 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자신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특히 아동에게 '반사회적 행동에 저항하는 일차적 울타리(the first defence against anti-social behaviour)'로서 기능하여야 하고 이러한 기능이 와해될 경우 사회의 균형 잡힌 그물망에 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시대의 위협과 압력을 맞이하여 국가는 부모로 하여금 자신의 자녀와 가족과 지역사회에 윤리적 의무를 다하는 존재로 기능하도록 이들을 지원하는 임무를 갖는 것이다.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의 맥락에서 보면 부모를 '지원(support)'한다는 의미는 그동안 전통적으로 암시되어 왔던 물질적 혜택보다는 '역량강화(empowerment)'라는 보다 덜 가시적인 의미를 갖는다. 이때의 지원은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당면하는 장애의 제거 혹은 극복의 의미를 갖는다. 재정적이거나 물질적인 지원은 낙인과 선

별의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포괄적이고도 보편적인 부모역할 지원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시민이 '건전하고 윤리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역량 강화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보편적인 사회정책으로서의 강점을 부각시킬 수 있다(Dwyer, 2002). 이러한 관점에서, 빈곤상태에 처한 많은 아동은 정부로부터의 일시적인 현물지원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가 그들의 부모를 지원함으로써 부모들이 자녀양육이라는 자신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해주는 간접적이고 바람직한 지원을 받게 된다. 이때의 정부는 복지의 '제공자(provider)'라기 보다는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자(enabler)'의 역할을 하게 되어, 부모가 자신의 능력을 다하여 자녀양육이라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역량(empowerment)'을 키우기 위한 정책과제가 부각되는 경향을 보인다.

## 2. 각 국의 부모역할지원 정책 현황

### 1) 미국의 부모역할지원 정책

미국의 부모역할 지원 정책은 「건강 및 인간 서비스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산하 「아동 및 가족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의 부모역할 지원 정책의 가장 뚜렷한 특징은 '자녀부양 강제(Child Support Enforcement)' 제도 및 '아버지 역할 강화 운동(Fatherhood Initiative)'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 제도들은 다양화된 가족형태로 인해 아버지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지 못하고, 아버지로부터 물질, 심리적 양육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다. 자녀부양 강제 제도는 아동의 부모를 찾거나, 부성을 확립·인지하여 이들이 자녀양육 의무를 다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아동에게 재정적, 의료적 지원을 하는 제도이다. 모든 주 정부와 자치지역은 자녀부양 강제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자녀의 양육을 담당할 부모는 다른 부모가 집 밖에 살고 있을 경우 이 서비스를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빈곤가족한시부조(the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프로그램에 있는 가족은 자동적으로 대상이 된다.

2006년에 새롭게 주창된 '부성강화(Fatherhood Initiative)'는 건강한 결혼을 지원하고, 부모역할을 책임 있게 수행하도록 조장하며, 부모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는 기금 프로그램이다. 이 운동은 아버지들로 하여금 자녀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자녀와의 관계회복을 도우며,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감 있게 아버지 역할을 수행하고자 할 때 겪는 장애

1) [http://www.acf.hhs.gov/acf\\_services.html](http://www.acf.hhs.gov/acf_services.html)

와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운동의 주요 목표는 건강한 결혼, 효율적인 부모역할, 경제적 안정, 자녀 방문 및 양육지원 등이다. 이 외에 효율적인 부모역할(Effective Parenting)을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긍정적인 영향(Positive Influence)<sup>2)</sup> 미치기», 「자녀의 생활에 관여하기(Father Involvement in Children's Lives)<sup>3)</sup>», 「자녀의 복지에 관여하기(Father Involvement in Child Welfare)<sup>4)</sup>», 「헤드스타트에 관여하기(Father Involvement in Head Start and Early Head Start)<sup>5)</sup>와 같은 사업들이 운영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전자정부(www.usa.gov)를 통해 부모에게 자녀연령별에 따른 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안내 및 훈련/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전문기구와 단체들이 운영되고 있다.

2) 영국의 부모역할지원 정책

영국의 주요 부모역할 지원 정책은 「아동, 학교 및 가족부(Dep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sup>6)</sup>, 「부모센터(Parents Centre)」<sup>7)</sup>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영국 정부의 부모역할 지원 정책의 주요 목표는 부모에게 무엇을 어떻게 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어디서 필요한 정보와 지원을 구할 수 있는지 알고 이를 이용하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방정부의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간주한다. 부모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녀의 연령이 어릴 때부터 수년간의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필요가 있으며 정부는 부모들이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자녀양육 지원을 위한 제도인 「아동을 위한 계획(The Children's Plan)」의 목표는「아동, 학교 및 가족부(Dep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의 목표와 동일하게 영국을 아동과 청소년이 자라나기에 가장 이상적인 장소로 만드는 것이라 간주한다. 부모와 가족은 아동이 자신의 발달적 잠재력을 구현하도록 지원해주는 사회의 최후 안전보루로 간주된다는 의미에서 예방 중심의 적극적 부모역할 지원정책 사례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정책들로 「아동과 청소년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기(Happy and Healthy)」, 「아동과 청소년을 안전하게 유지시켜주기(Safe and Sound)」, 「아동과 청소년에게 우수한 교육을 시키기(Excellence and Equity)」, 「아동과 청소년이 진학과정에서 일탈되지 않도록 해주기(Leadership and Collaboration)」와 같은 것이 운영되고 있다.

한편 영국의 아동(기본)법(The Children Act)은 1989년에 새로 정비된 것으로 부모는 아동을 양육할 책임이 있음을 전제로 부모의 아동양육 책임을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모

가 이혼 등을 따로 살 경우에는 아동과 함께 살고 있거나, 살 예정인 부모 중 한 사람이 면접교섭권을 갖고 있는 다른 부모의 아동 방문이나 아동과 함께 머무는 행위를 허용토록 요구하는 「교섭 명령(Contact order)」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거주 명령(Residence order)」은 부모 중 한 사람이 아동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거주명령은 때로 두 사람 이상의 성인에게 부과되는데 이 경우 아동이 각각의 부모와 얼마만큼의 시간동안 함께 살아야 하는지 규정하기도 한다. 대개 어머니에게 거주명령이, 아버지에게 교섭명령이 내려진다. 과거에는 이혼 시 부부간 재산 분할이나 결혼 지위의 변동 등이 주요 관심사였으나 이 법령이후 특히 이혼의 초기 단계에서 이혼 후 아동의 거주문제, 아동이 한쪽 부모와 함께 사는 문제, 다른 쪽 부모가 아동과 규칙적으로 접촉하며 아동의 성장, 발달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 등이 주요하게 고려되기 시작하였다. 영국의 부모센터<sup>8)</sup>에서는 자녀연령별로 부모역할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 다양한 정보와 정책 안내 및 훈련/교육을 통해 건전한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전문기구와 단체들이 있다.

3) 호주의 부모역할지원 정책

호주의 부모역할 지원 정책은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 및 토착민부(Dept. of Families, Housing, Community Services and Indigenous Affairs)」<sup>9)</sup>, 「호주 부모역할 웹센터(Raising Children Network: the Australian Parenting Website)」<sup>10)</sup>의 서비스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다. 호주 부모역할 지원정책의 특징은 '가족관계(family relationship)'를 강화시킴으로써 건강한 가족을 만들고 이를 통해 자녀양육을 잘 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가족관계 증진과 관련된 정부 기구 및 전문기관, website가 매우 많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건강한 가족과 지역사회 만들기 추진전략(Stronger Families and Communities Strategy: SFCS 2004-2009)」은 2009년까지 5년간 진행되는 호주 정부의 정책 사업으로 아동, 가족, 지역사회가 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한 목표로 '아동 친화적 지역사회 만들기(Communities for Children)',

2) <http://fatherhood.hhs.gov/Parenting/influence.shtml>  
 3) <http://nccic.acf.hhs.gov/poptopics/fatherinvolvement.html>  
 4) <http://fatherhood.hhs.gov/Parenting/welfare.shtml>  
 5) <http://fatherhood.hhs.gov/Parenting/hs.shtml>  
 6) <http://www.dcsf.gov.uk/index.htm>  
 7) <http://www.parentscentre.gov.uk/>  
 8) [www.parentscenre.gov.uk/](http://www.parentscenre.gov.uk/)  
 9) <http://www.facsia.gov.au/>  
 10) <http://raisingchildren.net.au/>

‘유아기-성장을 위한 투자(Early Childhood - Invest to Grow)’, ‘소외지역 배려(Local Answers)’ 라는 세 가지 실행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가족관계 서비스 프로그램(The Family Relationships Services Program: FRSP)은 「가족, 주거, 지역사회서비스 및 토착민부」의 주요 정책 서비스 중 하나이다. 이 정책의 주요목적은 아동, 청년 및 성인들이 어떠한 가족 형태 내에서 살든지 안전하고, 지원적이며, 도움이 되는 가족 관계를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족관계의 와해에 따른 정서적,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부모역할지원과 관련된 주요 서비스는 가족상담(Family Counselling), 청소년 중재 및 가족치료(Adolescent Mediation and Family Therapy), 가족관계 교육 및 훈련(Family Relationships Education and Skills Training) 등이 있다.

또한 가족관계서비스 프로그램의 정책집행을 위한 전문 기구가 여러 가지 있으나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면대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서의 ‘가족관계 센터(Family Relationship Centres)<sup>11)</sup>, 전화 서비스인 ‘가족관계 조언 전화(Family Relationship Advice Line)’, 인터넷 서비스인 ‘가족관계 온라인(Family Relationships Online)’ 등이 운영되고 있다. 호주 「부모역할 웹센터(Raising Children Network: the Australian Parenting Website<sup>12)</sup>」의 부모역할 안내를 보면 자녀 연령별로 부모역할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다. 특히 관련 정책 정보 및 전문가의 정보도 제시되어 있으며, 부부의 부모역할을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정책적 사안들, 가령 문화적 다양성의 문제, 정부의 지역사회 및 가족 서비스에 대한 관점, 부모를 위한 재정적, 물적 지원서비스 등을 별도메뉴로 구성하여 부모역할 지원이 단순히 부부가 자녀를 키우는데 필요한 양육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 가족 지원정책으로써 제공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다. 부모역할지원이 통합적 가족지원정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호주 ‘부모역할웹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메뉴 구성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국, 영국의 부모센터와 비교해볼 때 호주 부모역할지원 센터 메뉴 구성의 가장 큰 특징은 자녀를 임신, 출산하기 전에 성인 남녀가 건전한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담당해야 하는 가사업무, 일·가정양립의 문제 등을 첫 메뉴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자녀를 키우다가 맞을 수 있는 별거, 이혼에 따른 분리 문제 등 아동의 안전한 환경으로서 가족 환경을 고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11) <http://www.familyrelationships.gov.au/>

12) [www.raisingchildren.net.au](http://www.raisingchildren.net.au)

#### IV. 국내의 부모역할지원 정책 현황 분석 및 정책과제 설정

위에서는 외국의 부모역할 지원 정책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제 아래에서는 우리나라 정책환경과 현황에 비추어 도출될 수 있는 부모역할지원 정책을 크게 부모의 역량 강화, 부모권 보장 및 부모역할에 대한 보상, 다양한 가족을 위한 부모역할 지원, 맞벌이가정의 부모역할 지원 등 4가지 영역으로 구성하였다. 각 영역별로 정책의 필요성, 관련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그리고 세부과제의 순으로 정책을 개발하였다.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1. 부모 역할강화

###### 1) 정책의 필요성

아동은 모든 나라의 복지정책 및 사회정책의 주된 대상으로, 한 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고려할 때 가장 중요한 인적 자원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의 많은 부분은 아동 개인에 초점을 둔 보육 혹은 아동정책으로서, 아동 개인이 존중받으면서 발달의 기회와, 보호의 권리, 참여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표로 제정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에도 현재 아동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의 명칭이 Dept. of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영국), 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Affairs(스웨덴),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미국) 등 아동 개인에 초점을 두기 보다는 광범위한 범위, 즉 가족이라는 맥락에서 아동의 복지를 살펴보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아동이 개인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환경 속에서 상호작용한다는 체계론적 관점이 정책 영역에서 인식되면서 가능해진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가족 환경 중 부모는 자녀와 친밀한 상호작용과 근접성을 바탕으로 자녀에게 사회의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사회화의 주된 인자임과 동시에 자녀와 전면적인 관계에서 상호작용하는 보호 주체이기 때문에 가족 내 다른 어떤 하위체계보다 부모 체계의 부모역할(parenting)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Bronfenbrenner(1986)는 가족은 아동과 성인 모두의 능력과 인성을 형성하는 가장 강력하고, 가장 인간적이며, 가장 경제적인 체계라고 보았다(Bronfenbrenner, 1986; Riley & Bogenschneider, 2006, p. 69에서 재인용). 체계론적 관점에서 접근할 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가족과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부의 상호성, 지지, 정서적 조화 같은 부부관계의 질과 부부갈등은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부부 하위체계와 부모자녀 하위체계는 전체 가족

체계의 맥락에서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체계이다(정현숙, 옥선화, 2008, p. 107). 그러므로 부모의 역할 강화가 매우 중요하며 아울러 부부관계의 질 향상 및 갈등 해소에 대한 지원도 함께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한편, 부모역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며, 부모자녀 관계도 시간에 따라 역할, 상호작용의 내용, 관계의 특성이 변화한다. 따라서 각 단계의 특성에 대한 이해하여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부모역할을 융통성 있게 조절할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하다.

2) 관련정책 현황 및 문제점

가정정책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정책현황을 보면, 예방 중심의 가족복지 서비스 지원을 통해 생애전환 시기별 시민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지자체, 종교단체 등 유사교육기관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면서 각 시기별 특징적인 프로그램(예: 신혼기: 예비부모역할, 자녀양육기: 자녀와의 의사소통법, 중년기: 노년기 준비법 등)을 실시하고자 하며, 초·중·고·대학 교과과정에 가족의 다양성 등을 포함시키고자 한다. 또한 가족생활 관련 정보를 통합해서 제공하는 e-family(가칭)를 구축하고자 하며, 이 사이트를 통해 생애주기별 가족생활교육 및 정보를 제공하고 가족관련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가족유형별(예: 맞벌이 가족, 이혼가족, 조손가족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나아가 시·도별로 관내 청소년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의료기관 등으로 “가족충격 완충망”을 구축하여 가족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남성의 아동양육 참여를 활성화하면서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고, ‘찾아가는 아버지 교육’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였다(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

이러한 정책의 문제점은 아동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맥락에서 각 하위체계가 유기적으로 연계를 맺는 통합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보건복지가족부의 경우 가족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와 아동,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부모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에는 부모-자녀관계뿐만 아니라 부부관계, 가족을 지원하는 관계망,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 등 가족 및 사회 전반적으로 부모역할을 지원하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하나 현 정책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할 것이다.

3) 핵심과제

외국의 부모역할지원정책, 현재 우리 나라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부모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아동 및 가족정책 주무부처 통합 또는 유기적 연계 강화, 생애주

기를 포괄하는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개발과 선택권 확대 등 세 가지 과제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아동 및 가족정책 주무부처 통합 또는 유기적 연계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복지가족부 내 아동청소년권리, 아동청소년복지, 아동청소년안전 등 아동청소년정책을 다루는 부서와 가족정책을 다루는 부서를 통합하여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정책의 일관성과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가족영향평가 장치를 통해 아동, 청소년, 가족정책이 개별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하고 구체적인 정책들 간의 상호 연계성을 강화하고, ‘부모’의 관점에서 아동 및 청소년정책에 대한 욕구와 수요를 조사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위해서는 결혼 전 준비교육의 확대보급을 통해 건강한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예비부부의 준비도를 높이고, 일반 예비부부, 대학생, 군인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 전 준비교육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확대 실시하며, 결혼 전 준비교육을 통해 생애주기에 걸친 가족발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결혼 전 준비교육 이수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 공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부부관계 강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부부 간 자녀양육의 파트너십을 개발할 필요도 있는데, 자녀양육을 위해서 부부가 함께 파트너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부부관계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생애주기 단계별 확대 실시하며 부부가 함께 할 수 있는 여가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써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는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보급이 필요한데, 영유아기 자녀 뿐 아니라 청소년기, 성인기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부모교육이나 정보망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개발과 선택권 확대를 위해 자녀의 발달 수준에 맞는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개발, 공동육아, 품앗이 등 지역사회 공동 육아지원망 구축 등 지역사회의 인적 자원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양육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2. 부모역할에 대한 보상 및 부모권 보장

1) 정책의 필요성

전통적 관점에서 부모는 자신의 자녀를 양육하는 책무를

가지는 것이 당연한 존재이었으나, 그러한 책무에 상응하는 자녀돌봄에 대한 권리, 즉 부모권에 대한 측면은 충분히 논의되지 못하였으며 사회문제로도 인식되지 못하였다. 특히 부모역할과 부모권에 대한 경제적 접근에 기초한 지원정책은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가계의 전체소득에서 자녀양육 관련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계경제의 운영에 있어 장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저출산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등 사회전체적으로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자녀양육에 대한 개별가계의 높은 경제적 비용 부담은 실제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갖거나 자녀출산을 기피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6). 즉,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계소득에서 자녀양육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으며, 한 자녀 가계의 경우에도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자녀양육비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역할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보상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지원은 개별가계의 경제적 부담 경감 차원은 물론 중요한 사회투자전략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부모역할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방안은 부모가 미래세대를 양육하는 중요한 주체로서의 역할을 적절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므로 재원이 낭비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며, 결국 미래사회를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투자전략이 된다. 특히, 급속한 저출산·고령화의 인구변동으로 인해 사회적 위기에 직면한 한국사회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에 따른 경제적 비용 손실을 보전하고 양질의 자녀양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모든 가정에 대해 경제·사회·문화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사회적 손실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나아가 예방적 차원에서만 약 그러한 손실이 발생한 후 소요될 막대한 비용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임채원, 2006).

또한 부모역할에 대한 공적 부문의 경제적 보상은 무엇보다도 아동 자신의 건강한 성장발달에 대한 권리인 아동권의 보장에 효과적이다. 이는 사회투자전략적 관점과 그 맥락을 같이 한다.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함으로써 그들 미래의 사회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는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효과는 우선적으로 가정경제적 여건의 조성을 통한 부모역할의 역량 강화로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인적자본 투자는 향후 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인한 예방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미래세대에 대한 인적자본 및 가족의 사회자본 투자를 통한 기대이익이 단기적으로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모역할에 대한 경제

적 지원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최근 자녀양육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과 더불어 자녀양육을 하는 부모가 지역사회에서 영위하는 일상생활의 여건을 배려하여 부모권의 향유를 보장하는 정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 수준에서도 각종 시설 및 인프라의 정비를 통해 부모가 자녀양육 역할을 수행할 경우 당면하는 실질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친가족환경을 조성하여 부모의 자녀 돌봄 역할 수행을 적극적으로 배려해야 한다. 이는 자녀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인식을 확산하고 미래세대의 부모역할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2)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자녀양육 지원과 관련되는 정책으로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당면하여 가족정책, 교육정책, 노동정책, 보육정책, 아동·청소년정책 등 기존의 관련 정책내용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새싹플랜, 건강가족기본계획 등 장기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종합적 정책방안을 발표하였다.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도 ‘아이사랑 플랜’ 등을 수립하여 그러한 장기계획의 취지를 계승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종합적 관점의 부모역할 지원에 대한 접근은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나, 우리나라의 가족 관련 공공지출 수준은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23.4%에 비해 상당히 낮은 6.5%에 불과하므로(OECD, 2007) 정책의 내용과 수준은 보다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보육정책에서는 시설 이용가정에 대한 정책의 지원 대상 및 지원방식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 영유아의 육아지원시설 이용률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동일연령을 기준으로 OECD 국가들의 시설이용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므로 시설이용에 대한 지원의 강화가 필요하다(김현숙, 2007). 우선 시설이용에 따른 비용지원 방식에서 보면,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경제적 비용 지원이 부모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을 제한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간접지원방식은 시설이 운영비·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지출할 수 있는 비용을 시설장에 지원함으로써 시설의 자녀양육 관련 서비스 경쟁력이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소비자로서의 부모 선택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측면을 지닌다(한국조세연구원, 2007).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여 지불·정산업무를 전산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대상자별 이용실태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의 오·남용, 공공재정의 중복지원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나(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07. 12. 4), 새로운 방식의 전면적 도입은 실현되고 있지 않다. 이는 결국 부모의 정책지원에 대한 체감도 저조로 연결될 수 있다. 실제로 시설 이용에 따른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정부의 지원으로 점차 경감되어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약 80%가 다양한 수준의 비용혜택을 제공받고 있음에도(여성가족부 보도자료, 2008. 1. 15), 간접지원 방식은 혜택을 받고 있는 부모가 이를 충분히 체감하지 못하게 하며 자녀양육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게 한다.

둘째, 자녀양육 관련 의료비용 지원과 관련된 정책을 보면, 2005년 6세 미만 영유아기 자녀의 입원진료시 본인부담을 면제하는 등 건강보험의 의료지원이 강화되었으나, 연령기준을 보다 상향조정하는 등 정책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의료급여제도를 통해 2006년부터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정책은 18세 이하의 연령층으로 확대운영하고 있으나, 일반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영유아에 한정된 실정이므로 보다 보편적인 수혜대상 확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또한 2008년부터 임신부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초음파검사, 양수검사 등 임신부의 산전검사 비용을 1회당 최대 4만원씩 총 5회(20만원)의 e-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는데(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 8. 27), 향후 이러한 현금성 지원의 확대와 더불어 이용가능한 병·의원의 확대, 의료비용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난 참여정부의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추진하기로 한 '아동수당제'의 도입을 위한 정책적 진전 수준이 아주 미흡하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가족수당 형태의 지원제도를 도입하여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자녀 있는 가정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대한민국정부, 2006), 현재까지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 논의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 아동수당제에 대한 선진국의 정책성과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초기 도입유형을 확정하고, 구체적 시행을 위한 지원규모, 지원대상, 예산조달 방안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출산장려금이 지역주민간 위화감 조성 등 부정적 정책효과(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를 야기하고 있으므로 중앙정부의 체계적 지원기준 마련 역시 요구된다 하겠다.

넷째, 초·중·고생 및 대학생 자녀를 위한 학자금 부담의 경감을 위한 비용 지원은 주로 빈곤계층에 제한되어 있어 일반가계의 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학자금 비용에 대한 대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2007년 우리나라 전체의 사교육비 지출은 20조 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통계청, 2008), <표 1>과

<표 1> 교육비 지출 추이(2000 ~ 2004)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국내 교육비	93.6	92.9	91.8	90.9	89.1
- 공교육	67.1	63.7	62.3	60.3	58.8
- 사교육	26.6	29.2	29.4	30.6	30.4
해외 교육비	6.4	7.1	8.2	9.1	10.9

\* 자료: 한국은행(2005,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에서 재인용)

같이 자녀양육 관련 가계지출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교육비 및 해외교육비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전체 초·중·고 학생의 77%가 과외, 학원수강, 방문학습지, 인터넷통신강좌 등 사교육에 참여하여 월평균 22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소득계층별로도 사교육비 지출액 및 참여율의 격차가 높게 나타났다. 한편, 공교육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이용비용은 월평균 1만2천원으로 낮았으나 참여율은 38.2%로 저조하며, 특히 초등방과후 교육의 참여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통계청, 2008).

다섯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러한 현금성 지원 이외에도 자녀가 많은 가정의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및 자녀양육의 장애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 혜택 확대, 전기요금 부담 경감, 다자녀가정의 카드제 등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 중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카드 발급을 통해 외식, 공연, 학원, 주유소 등에서 이용할 수 있는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인센티브 정책은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보다 다양한 유형의 정책 아이디어의 실현과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조세제도 및 연기금제도는 부모역할 지원에 대한 정책의 미래지향적 장기 비전이 포함되어야 할 정책영역으로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신근로자와 부부 및 자녀 2명으로 이루어진 4인 가족의 소득세 부담률 차이가 단지 1.2%에 불과하며, 이는 OECD 국가의 평균 수준인 5.5%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OECD, 2006). 2008년 자녀양육 가정에 유리한 세제 개편이 일부 이루어졌으나, 이는 다자녀 가정에만 유리하며 오히려 한 자녀를 둔 소자녀 가정에는 실질적 혜택이 감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자녀출산을 격려하고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는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수에 따라 세제상의 혜택에 차등을 두는 근로장려세제(ETTC)의 도입이 2008년부터 시행되어 2009년에 최대 연 80만원 수준의 근로장려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이나, 18세 이하의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차상위가구 만이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기획재정부 보도자료, 2007. 3. 27) 부모역할에 대한 보편적인 보상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 이는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 대한 보상을 위한 정책이라기보다 저소득층의 노동시장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로서의 정책적 의미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국민연금의 경우,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부모에 대하여 자녀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출산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전체가입자의 평균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자녀가 2명인 경우 월 21천원, 자녀가 3명인 경우 월 32천원의 연금이 추가지급될 수 있는 제도(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 2008. 4. 30)로서 저출산 해소 및 실질적인 연금혜택의 확대를 위한 정책취지를 가지고 있다. 이는 아직 실질적인 수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현재 시행 중인 제도의 자녀 수 및 인정기간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도의 내실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 하겠다.

일곱째, 이상에서 살펴본 경제적 보상 관련 정책과 더불어, 가족친화적인 지역사회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부모권의 보장 차원에서 강화되어야 한다. 핵가족화에 따라 주된 양육자 외에 가족 내의 자녀돌봄을 보조하는 가족원이 없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어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실정임으로 다양한 지역사회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일본은 '소사화대책'에서 모든 가정에서 걸어서 갈 수 있는 장소에 육아지원 거점을 설치함으로써 고립된 양육을 지양하고 지역주민에 의한 주체적인 양육 지원을 촉진하도록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한 바 있다(일본 내각부, 2006). 우리사회도 지역주민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이웃이 함께 하는 양육을 가능하게 하며 지역사회의 잠재적 인력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 3) 정책과제

이상에서 부모역할 및 부모권에 대한 보장에 관한 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이에 기초하여 부모권 보장 및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적 자녀양육비용 지원을 위한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현재 시행 중인 임신·출산 가정, 영유아기 및 초·중·고생 자녀를 둔 가정 등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비용지원 방안을 보다 체계화하여 각 정책과제의 지원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고 시기별 지원액 및 지원대상에 관한 정책적 우선순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생애초기인 영유아기에 집중된 자녀양육 지원수준을 초·중·고생 및 대학생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 적용하여 개별가정에서 부모역할에 대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망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때 가족생애주기 특성을 반영한 장기 재무설계 수요를 고려하여 가족정책을 교육정책 및 노동정책과 긴밀하게 연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과 근로를 연계하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자녀의 경제적 독립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부모 역할이 집중적으로 수행되는 기간이 지나치게 장기화 되지 않고 단축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특히, 공교육 분야의 질적 강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는 사교육비 지출로 인해 증가하는 개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여 자녀의 학자금 마련으로 인해 왜곡되는 가계의 소비구조를 개선할 것이며 고령화시대 중년층의 노후준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또한 공교육 강화는 소득계층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고 사회양극화 현상의 심화를 저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육아지원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지원수준 및 부모의 선택권을 확대하여야 한다. 시설 이용비용의 지원대상 및 지원액의 규모에 대한 계층별 차등지원 기준도 장기적으로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다자녀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 혜택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육아지원 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간접지원 방식을 전환하여 부모가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직접적 지원방식인 보육지원금(바우처) 제도가 보편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비공식 부문의 조력을 이용하는 가정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조부모 등 친지나 이웃 등에 의한 비공식적 보육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준의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가족수당제(아동수당제)의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는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일차적 사회안전망으로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로서의 의의가 높으며, 이는 지난 정부의 추진계획에 따른 정책적 논의의 연계를 통한 진전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겠다. 우선 가정을 단위로 하는 통합적 가정복지정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아동수당제의 제도명칭을 자녀양육 가정에 대한 지원의 측면을 강조하는 "가족수당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도 있다. 가족수당제를 영유아자녀를 둔 시설이용가정에 대한 지원의 대안으로 한정적으로 접근하기보다 자녀양육 가족에 대한 기초적이고 보편적인 지원 방안으로서 자녀연령, 소득계층, 시설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장기적으로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가족수당제의 수혜규모는 자녀연령 및 자녀수 등에 따른 유형에 의해 결정되며, 확정될 경제적 비용은 지원규모에 따라 차별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자녀 있는 가정에 대한 보편적 지원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무엇보다도 예산조달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전체 복지예산의 확보와 더불어 예산배분과 관련된 여러 사업 간의 조정 등 철저

한 준비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자녀양육 가정에 유리한 조세제도 및 연기금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도입초기에 있는 EITC 제도가 자녀를 양육하는 근로자 가정에 대한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내용과 수준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자녀양육가정에 대한 조세제도로써 자녀세액공제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제안한다. 이는 소득계층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차등보육료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여 자녀수에 따라 세액을 공제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정책적 수요가 높은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으로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지 않는 부모역할에 대한 경제적 지원 정책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김현숙(2007)의 연구에서 상위소득 10%에 해당하는 소득계층의 평균 소득세율을 감안하여 상위소득 10% 계층의 맞벌이 기혼여성에게 자녀 1인당 연간 60만원을 지급할 경우 총 517억 4천 2백만원의 세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므로 제도도입의 규모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자녀 1인당 세액공제액을 결정하기 위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다. 한편, 장기과제로써 부모역할이 수행되는 장기간 동안 다양한 위기상황에서 부모가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모기금제를 도입하여 개별 자녀양육 가정의 장기적 재무설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지원망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제의 수혜대상, 수혜시점, 수혜액 등의 정책 지원기준을 점검하여 저출산 해소 및 부모역할에 대한 보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자녀양육에 대한 보상 규모를 확대하고 노후의 재무설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며 나아가 노년기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섯째, 보람 있고 편안한 자녀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통해 자녀양육이 이루어지는 가정이라는 공간의 의미를 지역사회 전체로 확장하여 사회의 각종 시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물론 정서적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다. 기존의 도서관, 공원, 체육시설 등 지역사회 시설을 자녀와 함께 이용하는 부모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시설 및 공간 정비기준을 마련하고, 모든 사회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가족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운영 비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인프라 확충에 대한 구체적 목표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모를 위한 사회의 여가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원하여 자녀돌봄에 따른 양육 스트레스를 예방하고 해소하며, 부모자녀관계의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한다. 한편 가족단위로 참여하는 프로그램 이외에도 자녀의 발달단계를 세심하게 고려하여 자녀돌봄 서비스를 적절

하게 제공하면서 부모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의 부모역할 프로그램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사회의 잠재적이고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부모역할 지원 관련기관 간 네트워크 연계망을 강화하여 프로그램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역시 마련되어야 한다. 지역사회의 기관 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증폭된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인해 소모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통합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의 참여도를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기관 간 협조체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를 통해 지역사회의 균형 잡힌 부모역할 프로그램 및 가족 관련 프로그램 구성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3. 다양한 가족을 위한 부모역할 지원

#### 1) 정책의 필요성

현재 한국 가족은 전형적 핵가족 비율이 감소하고, 한부모가정, 재혼가정, 입양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조손가정 등의 가족유형이 다양화되고 있다. 가족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서 개별 가족의세어 부모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지원관련 정책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정 가족원에게 제한된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다.

가족형태가 다르다면 그에 따른 부모역할과 그에 따른 육구역역시 상이하다. 최근 이혼율의 증가로 인해서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에 대한 관심과 요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한 쪽 배우자의 부재로 인해서 양육부담을 더 많이 지게 된다. 즉, 한부모 가정의 부모는 생계문제로 인해서 직업에 전념하게 되고 그에 따른 과중한 역할수행으로 인해서 자녀를 방치하거나 가정교육의 일관성 부족으로 부모-자녀간 긴장과 갈등을 유발하게 된다. 또,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녀의 학교생활 부적응, 문제행동 등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려우며(은순 역, 2002) 청소년기 자녀의 경우 부모 관심 소홀과 행동에 대한 통제와 감독 약화로 가출과 비행 가능성이 높았다(조성연, 2004).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모는 의사소통문제, 사회·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부모역할 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결혼이민자 여성의 자녀양육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신 때문에 자녀의 언어 및 지적 성장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재혼가정은 재혼 후 계부모와 의붓자녀와의 관계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부모역할 수행에 어려움을 갖게 된다. 계부모는 친자녀와 의붓자녀에 대한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가지

며, 부모-자녀간의 불명확한 경계가 설정되어 경계설정이 요구된다. 입양가정의 부모는 사회적·문화적 편견으로 인한 자녀양육의 어려움 호소하는데 국내입양이 비밀입양으로 선호하는 경향을 볼 때 입양가정의 부모역할 수행의 일차적인 문제를 알 수 있다. 입양아동의 양육관련 부담을 부모가 전담하는 실정이고 외부로부터의 지원은 경제적 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심리사회적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최근에 새롭게 증가하고 있는 조손가정에서는 조부모들은 손자녀 양육 후 생활변화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즉, 조부모의 양육으로 인한 피곤함과 노화 현상 등으로 건강악화, 경제적 형편 악화, 손자녀 양육으로 인한 시간적 제약과 친구나 이웃과의 교체기회의 상실로 인한 고립감, 휴식이나 여가시간의 감소 등의 불편함을 호소하였다(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박창기, 2002). 또, 손자녀의 양육은 손자녀의 건강염려, 양육태도의 차이로 인한 성인자녀와의 갈등, 학습지도의 한계(경북여성정책개발원, 2003), 양육에 대한 의논상대 부재를 염려하면서 조부모는 손자녀의 경제적 지원, 학습지도, 후원 및 결연 지원 요구하였다. 새터민 가정은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 야기하였다. 자녀세대의 남한에 대한 빠른 적응에 비해 부모세대의 소극적이고 주변적인 동화 등으로 인한 갈등이 노출되었다. 새터민의 한국생활 적응에 대한 두려움, 불안감, 자신감 결여, 자녀양육 관련 정보 부족 등이 자녀양육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었다(손병덕, 황혜원, 전미애, 2008).

## 2)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다양한 가정에서 부모가 처한 위치에 따라서 부모역할 수행에 있어서 지각하는 문제나 어려움이 다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모역할 지원정책이 다양한 가정의 부모역할을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가정 유형별로 정부의 지원책을 살펴보면 먼저 한부모 가정을 위한 정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법적지원으로 한부모가정 지원법이 제정되어 있어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제적 지원과 심리적·사회적·생활적 지원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경제적 지원은 아동양육비(만 6세미만 아동 1인 50,000원 지원), 학자금 융자, 아동급식비 지급,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교육급여(입학금과 수업료) 등을 포함하고 있다. 심리적·사회적·생활적 지원으로는 지역 내 관련복지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통한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교육과 상담 지원, 방과 후 아동지도, 보육 프로그램 운영, 심리상담, 가정봉사원 운영 등이 실시되고 있다. 입양가정 부모역할지원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2007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경제적, 서비스적 지원이 있다. 경제적 지원으로는

입양아 무상보육료 지원, 입양아 양육수당(07년도부터 시행) 지급, 입양아동에 대한 수업료 및 입학금 면제, 주택분양 및 전세자금 지원, 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인상 지원(07년)을 하고 있다. 서비스적 지원으로는 입양휴가제를 도입하여 공무원 대상 입양휴가(2주)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입양문화 발전을 위한 의식개선 사업(국내입양 활성화)을 실시하고 있는데 입양세미나, 입양의 날 개최 행사 및 모범 입양부모 및 입양유공자 초상, 전국 입양가정 대회, 입양홍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양가정에 대한 서비스는 국내입양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입양절차 및 입양전후에만 지원이 집중되고 있고, 입양 후 입양부모 역할수행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심리·정서적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새터민 가정 부모역할 지원정책으로는 경제적 지원, 학교생활 지원 등인데 무지개 청소년 센터를 통한 지원강화(새터민 청소년 및 부모교육, 교사연수 프로그램)하고, 중·고교 청소년 대상 편입학 및 등록금을 지원하며, 대학 특례 입학 지원 지속 추진(정원 외 편입 포함), 탈북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 운영 등이 실시되고 있다.

한편, 정책수행의 주관부서별 부모역할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농림부에서 실시하는 부모역할지원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젊은 층의 농어촌 거주를 유도하고,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04년부터 다양한 직불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정책은 도·농간 소득격차의 확대 및 농산물 개방의 진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영유아 양육비 부담 경감시키고, 도시에 비해 열악한 농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여건을 고려하여 여성농업인이 편히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 확대고자 하는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으로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3단계 자녀양육 및 정착기에서 부모역할지원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아동양육지원 서비스 제공하고 있는데 결혼이민여성의 양육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 실시 중에 있다. 아동양육지원 방문교육은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을 고려한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도방법 등 교육을 담당하게 되며 '08년 결혼이민자지원센터에서 아동양육지도사 1,600명 파견, 10,240가구 지원 예정으로 있다. 다문화가족 영유아 대상 보육교사 파견 등 아동 보육지원 프로그램 개발하고 다문화가족 밀집지역에 다문화 특성화 보육시설 지정 및 특별활동 프로그램 지원 계획하고 있다. 초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이 당사자(외국인 부인) 대상 한글 교육과 한국 문화 체험에 집중되었던 데 비해, 최근 들어서는 다문화 가족을 한 단위로 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

비스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에 부모역할 지원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향후 다문화가족의 부모역할은 자녀에 대한 양육 뿐 아니라 보육시설이나 학교 참여, 지역사회 시민으로서의 역할 등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 다양한 가정의 부모역할 지원정책의 첫 번째 단계는 국가주도 정책이 부모역할 지원으로 명시한 정책은 전무하다는 것이다. 개별 가정에서 경험하는 부모역할의 제한된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특히 현 정책의 큰 문제는 부분적으로라도 추진되고 있는 부모역할 지원책이 특정 가정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정부에서 실시하는 부모역할 관련 정책의 주요대상은 한부모 가정, 결혼이민자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장애아가정, 입양가정, 농어촌가정, 새터민가정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미미한 수준이며 재혼가정, 조손가정 등의 최근에 새롭게 나타나거나 증가한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전무한 실정이다.

둘째, 부모역할 지원과 관련된 정책과 서비스의 획일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현재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는 특정 가정으로의 경제적/물질적 지원에 치중되어 있어 가정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녀 연령에 따른 가족주기를 반영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혼가정이나 조손가정의 경우 가족생활주기와 (조)부모와 자녀의 발달단계의 차이를 고려한 서비스가 제시되어야 하는데도 차별화된 지원책이 부재하다. 특히, 조손가정의 조부모는 손자녀 양육어려움이 여러 가지 측면(노부모의 건강악화, 사회적 고립, 학습지도 어려움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려하는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다양한 가정의 부모역할 수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심리·정서적, 사회적 서비스가 동시에 제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경제적 지원에 치우쳐져서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 3) 정책 과제

다양한 가정의 부모역할 수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 정책의 첫째, 더 많은 가족유형을 포함해야 하며, 지원의 내용을 다양화하는 정책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가족유형별로 살펴볼 때, 한부모가정의 유형별(모자, 부자) 포괄적 부모역할지원과 서비스의 다양화(경제적, 교육적, 심리사회적 등)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한부모가정이 되는 과정에서 이혼한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청구 및 지급 관련 법·제도 집행 강화 방안 마련하고, 이혼 시 자녀양육비용합의서 작성 의무화를 통한 한부모의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경감하는 정책들을 통해서 부모역할을 적절히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양육비 지원 확대(양육

지원 현실화)하며, 모자가정의 취업어머니들의 경력단절 극복을 위한 장치 마련해야 할 것이다. 심리·정서적 지원책으로 모부자 가정으로의 방문형 맞춤형 아동양육 지원 서비스 실시(아이돌보미 또는 한부모가정 가정봉사원 제도 강화)하고, 취학아동에 대한 방과 후 및 방학기간 양육지원 서비스 다양화하고, 개별 가정의 부모역할 역량강화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자가정의 아버지 출산휴가(부성휴가) 및 육아휴직제도 개편하여 부자가정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여 할 것이다.

둘째, 현재 재혼가정 부모역할 지원은 거의 전무한 상황이다. 재혼가정 부모는 재혼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의붓자녀와의 관계 형성에 대한 현실감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이 많으며, 그로 인한 적절한 부모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으로써 가정의 불안정성을 높여지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재혼 준비교육과정에서부터 재혼가정생활을 지원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예비 재혼가정의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상담제도를 도입하고, 자녀연령별 자녀양육에 관련된 부모교육 실시(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하며, 부모자녀관계 강화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를 통한 부모역할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확대해야 한다. 입양가정에 대한 사회적 수용분위기 형성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지원을 실시하고, 예비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 교육프로그램 개발하여 실시해야 한다. 또,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 적응을 위한 서비스를 마련(입양가정 전담상담기구 마련)하며, 입양 후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정보제공, 부모교육을 해야 한다.

넷째, 결혼이민자 가정과 새터민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결혼이민자 가정의 부모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방문교육 사업 확대 실시하도록 한다. 특히 저소득, 농어촌 지역의 결혼이민자 가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양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발달주기와 가정환경에 맞는 자녀양육지도 방법에 대한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의 양육능력 향상시키도록 한다. 또, 이들 가정 부모에게 부모역할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지역네트워크 구축(예시 : 효과적인 부모역할 수행을 위한 적용 사례 및 부모교육 관련 on-off line 정보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새터민 가정의 부모역할지원은 세대차 극복과 한국사회 이해를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탈북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강화를 위한 가족생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되어야 한다. 또, 지역 내 국내 가정과 새터민 가정과의 연계시스템

을 도입·운영하고, on-off line 상의 자녀양육 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문제발생 시 도움을 제공하는 상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들도 제안할 수 있다.

끝으로 조손가정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조부모에게 손자녀의 자녀발달주기에 따른 부모역할 교육프로그램 실시하며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돕는 돌봄이 지원 제도 마련과 실시하도록 한다. 또, 손자녀 연령별 학업능력 향상을 위한 방과후 및 방학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실시하고, 조손가정의 세대통합을 위한 교육을 실시(조손관계 강화 프로그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조손가정의 가사 및 조부모의 수발 지원 서비스 제도마련과 이용쿠폰제 도입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 4. 맞벌이가정의 부모역할 지원

##### 1) 정책의 필요성

지금까지 맞벌이 가정에 대한 정책적·제도적 지원은 주로 일하는 여성과 남성의 중단 없는 취업생활 보장 및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왔다. 이러한 맥락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 지원은 상당히 수단적인 장치, 즉 맞벌이 가정이 갖게 되는 돌봄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취업생활의 지속과 안정 및 활성화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 지원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차원에서 접근되어 왔으며, 그 자체가 궁극적인 목표로 활성화된 정책과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따라서 맞벌이가정의 부모역할 지원은 부모역할 지원 자체를 다른 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간목표나 수단이 아닌 궁극적 목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을 지원을 위한 정책을 필요성은 첫째 맞벌이 가정의 증가에서 찾을 수 있다. 통계청(2007)년도 자료를 보면 여성 경제활동참가율(15-64세)이 1995년 51.4%에서 2007년도 54.8%로 증가하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률이 증가하면서 맞벌이 가정의 보편화 추세이다. 취업 여성은 M자형 경력단절 저점이 과거에 비해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이는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인해 근로자수가 30대 초반에 급격히 하락하였다가 30대 후반에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려 할 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취업하는 데 기인한 것이다. 저출산·고령화와 여성의 고학력화가 동시에 진행됨에 따라 기업의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그러나 육아부담의 해소, 승진·교육 등에서 성차별적 관행해소를 위한 정책적 노력 없이는 여성 고용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최근 가족정책의 핵심이슈는 맞벌이 가정의 일-가

정 양립에 관한 것이다. 이는 여전히 여성의 생애노동이 보장되지 못하는 현실을 가족 및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여기고 있다. 직장에서 여성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여성의 인적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 경제적으로도 여성인력의 지속적 활용이 국제적 이슈로 부각되기도 한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는 직장 영역에서의 제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가정생활 영역에서의 성평등한 역할분담과 더불어 자녀의 연령에 따른 돌봄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나아가 저출산 회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맞벌이 가정에서 부모역할 수행의 어려움은 아직 맞벌이 가정을 보편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인식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여전히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취업여성의 문제가 더 심각하며 생애 초기에 집중된 보육정책으로 인하여 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초등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에 대해서는, 그들의 부모역할 지원을 위한 정책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대부분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학교 현장을 중심으로 한 정책과 제도가 있을 뿐이다. 자녀의 성장발달에 따라 부모역할은 다양하게 전환되며, 특히 맞벌이 가정의 부모는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므로 이를 지원하는 제도와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 맞벌이 가정과 홀벌이 가정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도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지원정책이 필요한 이유인데 자녀양육의 1차적 책임을 가정에 두고, 동시에 공교육이 정상화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자녀양육과 교육을 두고 전업주부와 취업주부 간 갈등이 야기될 소지가 크다. 특히 자녀돌봄의 역할을 부모가 아닌 엄마 중심으로 인식하는 문화적 관습은, 맞벌이 가정의 일하는 엄마가 갖는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며, 자녀양육이나 학교생활 등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전업주부와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할 소지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 2) 정책 현황 및 문제점

보건복지가족부에서는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대응으로 양육부담의 감소하고자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이라는 아젠다를 갖고 부모양육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하여 개별 가정의 자녀양육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역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부모역할 지원은 단순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의미보다는, 보다 본질적인 차원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모든 가정의 부모가 건강한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 즉 그 자체가 궁극적으로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족정책 역점추진과제가 가족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과제 역시 부모역할 지원과 밀접한 관련을 가져야 한다. 즉, 가족돌봄통합지원망 구축하여 돌봄서비스의 가족단위 통합체계 구축, 지역 양육망을 구축하도록 하며,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해서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 남성의 아동양육 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 예방 중심의 가족복지서비스 지원인 생애전환 시기별 시민가족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가족정보통합 제공을 위한 (가정)「e-family」구축하여 생애주기별 교육 및 정보제공을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다른 정책으로는 아이돌보미사업 시행이 대표적이다. 이는 보육제도의 틈새를 보완하고, 일하는 엄마 아빠의 양육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서비스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07년도 사업결과 총137,462명 아동에게 97,374건 서비스 제공, 돌보미 2,177명 양성하여 파견하고 있다. 이는 양육자의 야근·출장 등 일시적이고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가족의 아동양육 부담 경감시키고 있다.

노동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모역할지원원은 일/가정 양립 관련하여 고용평등정책관에서 관련 업무 수행하고 있다.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법령 제정 업무, 육아휴직 및 급여·장려금제도 운영·개선, 산전후휴가 등 모성보호 제도 개선, 직장 보육지원제도 개선,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 등이 실시되고 있다.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08~’12) 추진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주요 정책,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고용평등사회 실현”을 비전으로 하여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5대 핵심전략과 20대 핵심 추진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5대 핵심전략은 ①여성의 역량 제고 및 일자리 확대 ②일하는 여성 중심의 육아 지원제도 마련 ③가정과 조화되는 근로제도 정착 ④남녀차별이 없는 일터 정착 ⑤사회합의에 기반한 여성 고용 인프라 확충이 포함되어 있으며, 구체적 내용 중 : 모성보호의 내실화 및 사회분담 확대(출산/육아비용의 사회화 확대, 모성보호 확충 추진, 모성보호제도의 조기정착 등), 직장 과 가정의 양립지원체제의 보강(취업모에 대한 우대정책에 관심,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보육부담 해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노동부의 정책은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에 대한 직접적 지원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일-가정 양립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그 결과 특히 육아기의 여성노동자의 양육부담 완화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추진하면서 직접적인 부모역할지원의 세부과제를 시행하지는 않지만, 일하는 여성의 복지 증진과 일-가정 양립의 차원에서 부모역할 지원과 연계되는 정책과제를 부각시키고 있다. 여성노동의 생애주기에

서 M자형 곡선이 지속되는 이유를 생애 일정 기간 노동을 중단하는 여성에게 자녀양육 및 가사 부담의 경감을 위한 보육 및 방과 후 학습 지원의 서비스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고 있다. 또한 여성친화적 기업문화의 모델 개발과 관련하여 승진·보수·직책에서 양성평등적 인사관리, 편의시설 설치, 근무환경 개선,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여성친화기업 인증제도 운영과 기업의 여성친화지수 개발 등도 추진하고자 하고 있다. 일하는 여성의 부모역할 지원을 직접적인 정책과제로 삼지는 않으나, 일하는 여성의 근로조건 개선, 일-가정 양립, 생애 중단 없는 취업생활 보장 등의 차원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직접/간접의 정책과제를 검토 및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정책 현황을 간략히 분석한 결과, 상술한 바와 같이 부모역할 지원에 초점을 둔 정책과 제도보다는 일-가정 양립 혹은 저출산 회복을 위한 중간목표나 수단적 의미에서의 부모역할 지원 서비스가 대부분인 것으로 평가된다. 대부분의 영유아 및 아동이 처음 만나는 생활환경으로서의 가정은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음에도 자녀양육과 돌봄의 주된 책임을 지고 있다. 특히 빈곤 뿐 아니라 경제적 양극화, 저출산과 고령화,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등장(김연명, 2007)은 사회투자론적 관점에서 인적 자원에 대한 투자,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건강한 가정 그리고 부모역할 등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부모역할 지원은 그 자체가 독립적이고도 궁극적인 정책목표로 규정되어야 하며, 향후 정책적 차원에서 보다 활성화되어야 할 과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가정의 사회적 기능, 자녀양육 기능, 건강한 부모역할 등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고 할 수 있다.

### 3) 정책 과제

맞벌이 가정의 일하는 부모의 건강한 부모역할 수행을 위해서는 가정에서의 성평등한 역할분담, 직장 및 학교/지역사회의 지원이 균형적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맥락에서,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과제는 크게 학교/지역사회, 직장, 가정생활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고자 하였다.

첫째, 맞벌이 가정을 보편형으로 인정하는 학교·지역사회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맞벌이 가정의 일하는 부모의 부모역할 부담을 경감시켜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부모역할을 지지하고 보충하며 대체하는 수준 높은 공적/사회적 서비스 제공 등과 연계되는 과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세부과제로 보육시설 및 각급 학교 교

사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제도 및 운영에 있어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스스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표준 마련 및 실행 정착하고, 아동의 연령별, 학년별 단계에 맞는 방과후 교실 운영과 각종 가족참여의 행사를 융통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장 재량 방학, 자율학습의 날, 효도방학, 단기방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안전한 보호와 돌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학부모모임(부모교육, 운영위원회, 조직 결성 등)의 융통적인 운영하여 학부모모임의 저녁시간 운영, 온라인을 통한 정보제공과 소통, 자율성의 보장, 정보 공개 등 다양한 방식을 동원하여 맞벌이 가정과 홀벌이 가정 간의 격차를 줄여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지역사회에서 주부를 유효노동력으로 접근하는 인식 개선을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지역사회 대부분의 활동은 자발성에 기초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대해 구별하지 않아야 할 것이고, 공무원, 지역사회 단체, 전문가, 관련자 등에 대한 교육, 캠페인 등을 통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다양한 전달체계의 보육/돌봄서비스 활성화해야 한다. 보육시설 이용의 틈새를 해결하기 위한 보육인력 파견 서비스 다양화해야한다. 관공서, 공적/민간 전달체계 등의 야간연장운영/주말운영 상시화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가 자녀양육을 위한 정보 및 서비스 획득과 접근을 일상적인 권리로 누릴 수 있는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이 요구된다. 구체적인 세부과제로는 육아데이/패밀리데이의 상설화, 가족공유시간 확보를 위한 제도, 다양한 근무시간제도 실시, 기존 관련제도 강화 등으로 근로자의 가족권·부모권 보장을 위한 시책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직장 내 일-가정 양립을 위한 one-stop service system 확충되어야 한다. 실천적 과제로서는 직장으로 찾아가는 어머니교육, 아버지교육 활성화가 중요하다. 또, 가족친화문화조성프로그램 조력 역할 강화를 위한 관련기관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 정책이 필요하다. 세부과제로는 평등가족교육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보육시설, 각급 학교에서 가족생활교육의 의무화, 그 내용 속에 민주적이고도 평등한 가족관계 내용의 비중 확대하고, 평생교육기관의 평등가족교육 제도화하며, 부부 간 평등한 역할분담에 위배되는 교육매체에 대한 감시, 이를 제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구의 조사감독 및 시정 요구권 강화해야 한다. 또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을 위한 다양한 방안 도입 지역사회 건강가정지원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공동/필수사업의 일환으로 평등한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 상담, 문화활동, 정보제공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

민단체의 관련 활동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특히 남성의 아버지역할 수행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아버지역할 수행을 위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문화, 공동체형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을 활성화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해야 한다.

## 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가족정책의 한 영역으로서 부모역할 지원 정책에 접근하면서, 생애발달론적 관점, 가족체계적 관점 및 통합적 가족정책 관점에 기초하여 부모역할지원과 관련된 현행 법 및 문헌과 외국의 부모지원정책을 검토·분석하고, 우리나라 정책현황과 환경에 맞는 부모역할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부모의 역량 강화, 부모권 보장과 부모역할 보장, 다양한 가정을 위한 부모역할 지원 그리고 맞벌이 가정의 부모역할 지원 등 네 가지 정책과제를 도출하였으며, 각 과제영역별로 정책의 필요성, 정책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세부과제의 순으로 정책을 개발하였다. 외국의 부모역할 지원 정책을 분석한 결과, 가족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그리고 가족의 변화와 함께 아동과 가족을 통합하여 접근할 필요가 대두되었으며 이는 곧 부모역할 지원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부모의 역량 강화가 강조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가 주목하는 바,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부모역할지원 정책에 접근한다 함은, 우리 사회의 모든 아동들의 전인적인 발달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가정을 중심으로 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기초한다. 따라서 부모의 역할을 새롭게 조망하며 가족 즉 부모와 사회가 미래사회의 주역인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기 위한 파트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로써 전 생애주기에 걸친 부모역할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준비를 통해 역량 있는 부모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반 환경과 자원을 공급하기 위한 부모역할지원 정책의 필요성을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출한 네 가지 부모역할지원 정책의 세부과제를 요약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 같은 연구는 부모권 및 부모역할에 대한 재조망의 기회를 우리 사회에 제공할 것이며, 무엇보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부모, 가정, 지역사회의 소통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특히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맥락에서 부모역할 지원 정책을 활성화시키는 토대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가 갖는 의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지원 정책의 실천을 위한 법과 제도의 마련, 이에 기초한 구체적인 부모역할 지원서비스의 개발, 전달체계를 통한 서비스 보급의 효율



〈표 2〉 부모역할 지원 정책영역과 세부정책과제

정책영역	세부정책과제
부모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가족정책 주무부서 통합 또는 유기적 연계 강화</li> <li>- 생애주기를 포괄하는 가족관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li> <li>- 자녀양육 지원 서비스 개발과 선택권 확대</li> </ul>
부모권 보장 및 부모역할 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애주기에 걸친 통합적·효율적 자녀양육 비용지원 체계 구축</li> <li>- 육아지원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의 지원수준 및 부모의 선택권 확대</li> <li>- 가족수당제(아동수당제)의 도입</li> <li>- 자녀양육 가정에 유리한 조세제도 및 연기금 제도 수립</li> <li>- 보람 있고 편안한 자녀양육을 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li> </ul>
다양한 가족의 부모역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책 대상과 내용의 다양화</li> <li>- 재혼가정생활 지원 체계 마련</li> <li>- 입양가정에 대한 입양 사전·사후 서비스 강화를 통한 부모역할 지원과 사회적 인식 개선 확대</li> <li>- 결혼이민자가정과 새터민 가정의 한국생활 적응을 위한 통합적 지원 시스템 마련</li> <li>- 조손가정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지원체계 마련</li> </ul>
맞벌이가정의 부모역할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맞벌이 가정을 보편형으로 인정하는 학교·지역사회 체계 구축</li> <li>-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조성</li> <li>-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조성</li> </ul>

화 방안 마련 등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들은 건강한 결혼과 가족 그리고 부모됨의 긍정적 가치를 사회에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다.

또한 향후 지속적인 관련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지원 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예컨대 정책 입안자, 행정가, 연구자 등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부모역할 지원 정책의 실효성과 적절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보다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통합적 가족정책의 출발을 상징하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근거, 전국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가족정책 추진의 대표적인 전달체계로 이해할 때, 본 연구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부모역할 지원 정책의 세부과제들이 구체적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건강가정지원센터의 프로그램으로 공급될 수 있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도 계속 축적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경북여성정책개발원(2003). 농촌여성노인가구의 손자녀 양육실태와 정책과제.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7.3.27). 근로장려세계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08.9.30). 209,2조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예산안 편성.

김경신, 정민자, 라휘문, 진미정, 박정윤(2008). 통합적 가족정책. 대통령직속기획위원회.

김미숙, 이상헌, 박민정, 홍석표, 조병은, 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연명(2007). 사회투자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과 쟁점. **사회복지정책**, 30, 423-443.

김은정, 진미정(2007). **한부모어머니들의 취업과 복지**. 서울: 도서출판 신정.

김현숙(2007). 보육정책 방향과 정책수단에 대한 검토. 한국조세연구원.

대한민국정부(2006). 2006-20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박창기(2002). 농촌지역 조부모-손자녀관계의 가족기능에 관한 연구. 대구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4.29).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최초 수급자 발생.

보건복지가족부 보도자료(2008.8.27). 건강보험, 초음파 등 산전진찰에 드는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07.12.4). e-바우처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충 성과.

손병덕, 황혜원, 전미애(2008). **가족복지론**. 서울: 학지사.

송혜림(2008). 통합적 가정정책 : 선언과 실천. **한국가정관리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1-20.

여성가족부 보도자료(2008.1.15). 월 평균소득 398만원 이하까지 보육료 지원.

일본내각부(2006). **2006 일본 소자화사회백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공역). 서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년 원저발간)

임채원(2006). **신자유주의를 넘어 사회투자국가로**. 서울: 한울아카데미.

전만길(2005). 외국인 주부 한국생활실태조사.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성연(2004). **한부모 가족 : 여성 한부모가족의 모-자녀관**

- 계. **한국가정관리학회** 22(1), 153-167.
- 정현숙, 옥선화(2008). **가족관계**.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 통계청(2008).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6). 2005년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 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8). **지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응 인구정책 컨설팅 등 지원모형 개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은행(2005). 소비구조의 변화와 향후 정책대응 방향.
- Dwyer, P.(2002). Making sense of social citizenship: Some user views on welfar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Critical Social Policy*, 22(2), 273-299.
- Edwards, R., & Gillies, V.(2004). Support in parenting: Values and consensus concerning who to turn to. *Journal of Social Policy*, 33(4), 623-643.
- Gillies, V.(2005). Meeting parents' needs? Discourses of 'support' and 'inclusion' in family. *Critical Social Policy*, 25(1), 70-90.
- OECD(2006). Taxing Wages 2004/2005.
- OECD(2007). Social Expenditure Database.
- Riley, D., & Bogenschneider, K.(2006). Do We Know What Good Parenting Is? Can Public Policy Promote It? In K. Bogenschneider(Ed.), *Family Policy Matters* (pp.67-84). Lawrence Erlbaum Associates, Inc.
- Sara, S.(2002). **이혼가정 아동 : 가정과 학교의 역할**. 오은숙(역). 서울: 학지사. (1992년도 원저발간)
- <http://fatherhood.hhs.gov/Parenting/influence.shtml>
- <http://nccic.acf.hhs.gov/poptopics/fatherinvolvement.html>
- <http://raisingchildren.net.au/>
- [http://www.acf.hhs.gov/acf\\_services.html](http://www.acf.hhs.gov/acf_services.html)
- <http://www.dcsf.gov.uk/index.htm>
- <http://www.facsia.gov.au/>
- <http://www.familyrelationships.gov.au/>
- <http://www.parentscentre.gov.uk/>
- <http://www.raisingchildren.net.au>

접 수 일 : 2009년 5월 1일

심사시작일 : 2009년 5월 8일

게재확정일 : 2009년 6월 9일